

집중 호우 대비 근로자 안전 확보에 총력 대응

- 7.19. 긴급 전국 지방노동관서장 회의 개최, 안전 조치 상황 점검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어제 집중호우로 인한 근로자, 사업장 피해가 없게 대응하도록 긴급지시한 데 이어, 7월 19일(금) 오전 10시 영상으로 호우 대응 「긴급 전국 기관장 산업안전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집중호우에 대한 지역별 사업장 안전조치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중심의 총력 대응을 지시했다.

지난 7월 8일부터 10일까지 집중호우로 5개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7.15.)된 바 있고, 이번 주말과 다음주에도 수도권과 강원 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강수가 예상됨에 따라 긴급하게 호우 대응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정식 장관은 “기후변화로 인해 기상 예측이 한층 어려워진 만큼 최악의 기상상황을 염두에 두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가용한 산업안전보건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하여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붕괴·감전과 관련된 안전조치와 강풍으로 인한 가설물·자재의 낙하 및 크레인 전도 등에 대비하고 있는지를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집중호우로 인해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가 작업을 중단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가장 우선적으로 챙기도록 지도하고, 비가 그친 후에도 피해 복구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달라”라고 당부했다.

이정식 장관은 한국산업안전공단 등 산하기관에도 사업장이나 근로자분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집중호우 사전 대비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 붙임: 1. 호우 대응 「긴급 전국 기관장 산업안전 점검회의」 개요
2. 고용노동부 장관 모두 말씀
3. 「호우·태풍 대비 산업재해 예방 및 대응 대책」 주요내용
4. 호우·태풍 대비 사업장 가이드 및 자율점검표

담당 부서	산재예방감독정책관 화학사고예방과	책임자	과 장	이지운 (044-202-8965)
		담당자	사무관 전문위원	이재희 (044-202-8968) 김상범 (044-202-8972)

□ **배경**

- 지속되고 있는 집중호우에 대응하여 호우 비상대응체계 및 사업장 안전관리 점검을 위해 긴급 전국 기관장 회의 개최

□ **회의 개요**

※ 모두 말씀까지 공개

- **일시:** 7.19.(금) 10:00~11:00, 서울고용노동청 9층 소회의실(영상회의)

○ **참석대상**

- (본부) 장관, 차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기획조정실장, 대변인,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산안본부 과장 등

- (지방) 전국 48개 지방관서장

시 간		내 용	비 고
10:00~10:05	5'	· 모두 말씀	장관
10:05~10:10	5'	· 집중호우 관련 주요 대응현황 및 당부사항	산재예방감독정책관
10:10~10:35	25'	· 지방청(대표지청 포함 8개청) 호우 대응 추진경과 및 대응계획	청별 약 3분 내외
10:35~10:55	20'	· 논의	
10:55~11:00	5'	· 마무리 말씀	장관

- 지금 대한민국은 호우로 인해 비상상황입니다.
 - 주말 이후에도 수도권과 강원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어 산업현장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긴급하게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 대통령께서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가 만전을 기할 것을 연일 강조하고 계십니다.
 - 기후변화로 인해 기상예측이 한층 어렵고, 기록적인 강우량이 국지적으로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최악의 기상상황을 염두에 두고 가용한 산업안전보건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하여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기상상황 전파 및 사업장 안전조치 점검 >

- 우선적으로 중대재해 사이렌,
지역별 협의체, 지방관서 운영 SNS 등을 통해
기상상황을 수시로 사업장에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취약사업장을 중심으로 현장에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철저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금년에는 특히, 환경부·행안부·산림청의
침수·붕괴·매몰 우려 지역 데이터베이스 등을 활용하여
각 지방관서에서 호우 취약사업장을 선정하고
비상연락망을 구축·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호우 취약사업장을 중심으로
패트롤 점검 등을 통해
호우로 인한 침수·붕괴·감전에 대비한 안전조치와 함께
강풍으로 인한 가설물·자재의 낙하 및 크레인 전도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집중 지도·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각 사업장에서도
자체적으로 구축한 정보체제와 대피방안 등을
다시 한 번 점검하도록 지도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극한 호우시 조치사항 및 피해 복구 지원 >

- 극한 호우가 예상될 때에는 사업장에서
떨어짐 위험 등이 있는 외부 작업을 중지하고,
위험장소에 접근을 통제하도록 해야 합니다.
 - 특히, 저지대·침수지역 내 사업장에서는
근로자를 최우선적으로 대피시키도록
현장점검과 지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근로자의 안전이므로,
집중호우로 인해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단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 이에 함께
비가 그친 후에도 피해 복구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마철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장의 피해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해 주시고,
산업안전보건공단 ‘호우 복구지원팀’을 통해
피해 사업장의 복구 과정에서 기술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당부말씀 >

- 작년에 이어 올해도 예상을 뛰어넘는 극지성 호우로 전국에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 악화되는 기후 상황 속에서 근로자와 사업장의 안전에 대한 우리부의 역할은 더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 우리의 적극적인 현장 활동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절박함을 가지고 현장을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저를 비롯해 본부의 간부들도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에 대응해서 현장 중심으로 사업장 안전을 챙기겠습니다.
 - 전국의 지방고용노동관서장도 사업장 안전에 빈틈이 없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 더하여 집중호우 대응 및 복구 과정에서 직원들의 안전과 건강에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1 취약사업장 관리 및 상황 전파체계 구축

- **(취약사업장 관리)** 유관부처의 AI 기반 호우·태풍 취약지역 정보 등에 근거하여 취약사업장* 사전 파악(5,929개소) 및 집중 모니터링 실시
 - * 행안부·환경부·산림청 등의 침수·범람·매물 등 인명피해 우려 지역 및 사업장 등을 활용하여 취약사업장 DB를 구축·관리
- **(상황전파)** 기상 상황(호우·태풍예보 등)* 및 사고사례 발생시 중대재해 사이렌 등을 활용해 사고사례 및 대응요령 실시간 전파
 - * (전국단위) '중대재해 사이렌', 건설근로자공제회 전자카드앱, 직종별 협의체를 통해 전파
(지역단위) 재난담당자가 지방관서 운영 SNS 등을 활용하여 관할지역 사업장에 전파

2 호우·태풍 비상대응체계 구축·운영

- **(특별대응기간 운영)** 「호우·태풍 및 폭염 특별대응기간(6~8월)」 운영
 - 지방관서-공단-민간재해예방기관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장 점검·감독, 컨설팅·기술지도 활용 안내·지원시 여름철 재난 대비 병행
- **(비상대응체계 운영)** 사업장 피해상황의 접수·전파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해 본부-지방관서-안전보건공단 비상대응체계 운영
 - * 특히 취약사업장(5,929개소)에 대해서는 담당자 비상연락망 구축 및 현장점검 등 실시
 - 호우·태풍 경보 발령시(또는 복구시) 장·차관 또는 본부장 주재 전국 기관장 회의("긴급 점검회의") 개최, 상황 점검 및 총력 대응
 - * 6.13. 차관 주재 여름철 재난 대비 확대 기관장 회의 개최
- **(지침 정비)** 산업재해 예방 단계별(대비-대응-복구)·주체별(본부/지방관서/공단) 세부 대응방안을 담은 「2024 호우 특별 대응지침(6.21. 배포)」, 「2024 태풍 특별 대응지침」 마련·배포

3 안전관리 점검 강화

- **(사업장 집중점검)** 호우·태풍 취약사업장 및 사고발생 우려 사업장 등*에 대해 집중점검 및 지도
 - * '위험지역·사업장 DB' 기반 취약사업장, 위험업종(건설·화학·조선) 등
 - 장마철 도래 이전*, 호우·태풍 예보 발령 및 복구단계시 여름철 재난 대비 「특별 현장점검의 날」 지정·운영(6~8월)
 - * 6.12., 6.26. 여름철 자연재난(폭염·호우) 대비 '현장점검의 날' 운영
7.15. 호우·폭염 대응 '특별 현장점검의 날' 지정·운영

- **(기관장 현장행보)** 장·차관, 기관장(청장·지청장 등) 중심으로 호우·태풍 단계별(대비·사전·사후) 현장점검 등을 통해 철저한 사업장 안전관리 당부
 - * 6.5. 차관 폭염·호우 대비 건설현장 점검, 6.12. 노동특위차관 건설현장 방문
 - 7.4. 차관 폭염 대비 물류센터 점검, 7.8. 장관 호우·폭염 대비 건설현장 점검
 - 7.10. 장관 폭염 대비 물류센터 점검 7.12. 고용부·국토부장관 호우·폭염 대비 건설현장 방문

4 사업장의 대비·대응·복구 지원

- **(가이드 마련)** 호우·태풍 대비 사업자·근로자 스스로 예방·대응·복구시 활용 가능한 가이드* 마련·배포
 - * **공통** 「호우·태풍 대비 사업장 안전관리 가이드」(6.21.)
 - 건설업** 「장마철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6.3.)
 - 배달종사자** 「배달종사자를 위한 호우·태풍 안전관리 이행수칙 가이드」(6.24.), 9개 플랫폼사 배포
- **(자율 안전점검)** 주요 취약사업장에 대해 호우·태풍 대비 사전 자율 안전점검 실시(6.4.~6.21.)
 - 관할 사업장에 자율점검표 및 안전수칙 리플렛, SNS 전파 등 자율점검 지도
 - * ① 도급·수급 사업장의 합동 점검,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경보체계 구축 및 대피 방안 등 논의 적극 권고
 - ② 호우·태풍으로 인해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작업중지 관련 공문 송부, 사업주·근로자 작업중지 적극 지도
 - 사업장 컨설팅·기술지도·교육시 호우·태풍 자율점검 및 안전수칙 안내
 - * 호우·태풍에 의한 전도, 낙하 등 핵심 위험요인별 안전조치 이행여부 지도
- **(복구 등 기술지도)** '호우·태풍 복구지원팀'을 구성하여 피해 복구시 2차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에 '복구 작업시 안전보건조치' 기술지도·지원

5 호우·태풍 산재예방 홍보 강화

- **(홍보매체)** 호우·태풍 산재예방 홍보자료 제작·배포, 산업안전전광판(전국 40개), 라디오 캠페인 등을 활용한 사업주·근로자 홍보 병행
- **(유관기관)** 전국 39개 지역별 안전문화실천추진단에 참여한 협·단체, 재해예방기관, 지역 언론사, 사업장 등을 통해 전방위적 홍보·확산
 - * ▲ 노·사단체: 소속 회원사 대상 홍보 ▲ 재해예방기관: 사업장 방문시 관련 내용 안내
 - ▲ 지역 언론사: '자연재난 사업장 대비' 관련 보도 협조 ▲ 사업장: 실시 후 타 사업장 전파
 - ▲ 지자체: 지자체 관리 매체(전광판, 현수막게시대 등) 활용 홍보

가. 호우·태풍 대비 사업장 조치사항 가이드

호우·태풍 대비 사업장 조치사항

공통사항

- 🎯 집중호우·태풍 예비 특보 발령지역 사업장은 재택근무 실시 및 휴가 적극 권고
- 🎯 호우·태풍에 의한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중지**
* 산안법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 🎯 호우·태풍 발생시부터 **기상특보 발령 상황 상시 모니터링**
* (기상청) 날씨누리 홈페이지, 기상특보 상황(날씨 > 기상특보 > 특보현황)

강풍

- ✔️ 각종 시설물, 표지판, 자재 등 결속상태 점검
- ✔️ 타워크레인 불이 자유롭게 회전하도록 브레이크 해제(부러짐, 휨 방지)
- ✔️ 강풍시 철골조립, 양봉작업 등 아외작업 중지

침수

- ✔️ 배수로, 배수시설 사전점검 및 정비
- ✔️ 지하구조물 등 침수 우려 장소 작업 중지
- ✔️ 침수된 장소에 인원 및 차량 출입통제 (감전, 질식 위험 확인)

붕괴

- ✔️ 옹벽, 석축 등 붕괴 우려 장소 사전점검
- ✔️ 방수포, 흙막이 지보공 설치 등 붕괴예방조치 설치
- ✔️ 붕괴매몰 발생 우려 장소에 출입통제 및 통행금지

감전

- ✔️ 충전부 및 배전반 등으로 빗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관리(침수 우려 시 전기설비 이전 설치)
- ✔️ 누전차단기 연결, 외함전지, 절연상태 점검 및 보수
- ✔️ 침수 등 손상된 기계설비 점검시 사전 전원차단 조치

고용노동부

